

제 8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5:00

▣ 개최장소 : 코로나19로 인한 다자간 메신저

사회복지
법인 봉생사회복지회



제8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수) 15:00

2. 장 소 : 다자간 메신저를 활용한 회의 진행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차원)

3. 참석자 : 대표이사 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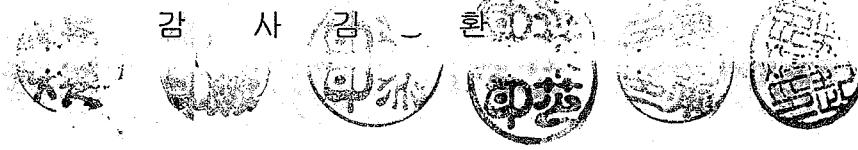
 이사정옥

 이사김환

 이사김수

 이사송근

 감사김환



4. 안건 : 1안.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결산추가경정(안) 심의
2안. 법인 및 산하시설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3안. 법인 및 시설회계 전·출입 편성(안) 심의
4안. 법인 산하기관 전출금 반환건 심의.
5안. 법인 산하기관 기능보강사업 관련 법인 전입금 집행(안) 심의
6안.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5. 회의진행순서 : 가. 개회 (성원보고)

 나. 대표이사 인사

 다. 전자회의록 처리

 라. 안건심의

 마. 기타토의

6. 회의 진행 사항 및 내용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이사 8명 중 5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4장 제28조에 의거, 이사회의 개의정족수가 성립되었음을으로 보고하다.
- 대표이사가 제81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됨을 선언하다.

나. 대표이사 인사

- 바쁘신 와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다. 전자회의록 처리

- 추유진 과장이 전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회의록을 처리하다.

마. 안건심의

1안.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대표이사는 정관 제26조(의결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법인 산하시설의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구하다.
- 추유진 과장이 법인의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32,000천원 증가(Δ)한 총액 417,000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 보고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관장이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자성대노인복지관 32,000천원 감소(∇)한 총액 4,59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자성대노인복지센터 이은숙 센터장이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36,375천원 감소(∇)한 총액 587,260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봉생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추유진 센터장이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5,466천원 증가(Δ)한 총액159,952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최혜선 센터장이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21,000천원 증가(Δ)한 총액241,000천원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봉생재가장기요양센터 박진미 센터장이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장기요양사업 66,000천원 감소(∇)한 총액509,000천원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가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진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므로, 승인하다.

2안. 법인 및 산하시설2021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대표이사는 정관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의결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장기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법인 산하시설의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2021년 본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구하다.
- 추유진 과장이 법인의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총액 284,000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이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총액4,581,000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자성대노인복지센터 이은숙 센터장이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총액602,850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봉생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추유진 센터장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총액154,356천원, 식사지원사업 총액32,702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최혜선 센터장이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총액218,000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봉생재가장기요양센터 박진미 센터장이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장기요양사업 총액661,000천원으로 예산 편성함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가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이사진들의 의견을 물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므로, 승인하다.

3안 법인 및 시설회계 전·출입 편성(안) 심의

- 대표이사는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자성대노인복지센터의 수익금 20,000천원을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법인 및 산하기관의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금을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2020년 시설회계 전출금 편성(안)

기관명	금액	비고
자성대노인복지센터	20,000,000원 (금이천만원정)	

2020년 법인회계 전입금(자부담) 지원 내용

기관명	금액	사용내역	비고
봉생사회복지회	15,000,000원 (금천오백만원정)	법인 및 산하기관 복지사업 운영	
자성대노인복지관	5,000,000원 (금오백만원정)	노인복지사업의 운영	

-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함으로, 안건이 승인됨을 알리다.

4안. 법인 산하기관 전출금 반환건 심의

- 대표이사가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법인 산하기관의 전출금 반환건에 대한 이사진들의 심의를 구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이 2020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법인 산하기관 자성대노인복지센터의 전출금에 대해 법인으로 부터의 반환이 불가피 함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다. 문서번호 복지지원과-53878(2020.12.09.)

□ 법인으로부터 시설회계 반환금 내역

기관명	금액	비고
자성대노인복지센터	15,000,000원 (금천오백만원정)	

-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함으로, 안건이 승인됨을 알린다.

5안. 법인 산하기관 기능보강사업 관리 법인 전입금 집행(안) 심의

- 대표이사는 법인 산하기관 자성대노인복지관 2021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안)에 대한 이사진들의 의견을 구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이 2020년도 자성대노인복지관의 침수피해로 인해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021년도에 진행해야 함에 따라 법인 전입금 집행(안)관련 내용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진들의 동의를 구하다.

기관명	금액	사용내역
자성대노인복지관	10,480,000원 (금일천사십팔만원정)	기관 기능보강 공사 설계용역비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함으로, 법인 전입금 집행(안)을 승인하다.

6안.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 대표이사 법인 산하시설 봉생재가장기요양센터, 자성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내용에 대해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봉생재가장기요양센터

변경전	변경 후	비고
제11장 보수 (제61조 지급일) 2.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장 보수 (제61조 지급일) 2.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자성대노인복지센터

변경전	변경 후	비고
제11장 보수 (제61조 지급일) 2.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장 보수 (제61조 지급일) 2.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항에 대해 전원 찬성함으로, 개정(안)을 승인하다.

마. 기타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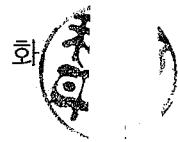
- 참석자들은 논의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제반 행정업무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표이사에게 당부하다.
- 대표이사가 논의되고 승인된 사항을 재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7시 00분이 되다.

상기 사항을 참석자 전원이 확인함.

2020년 12월 16일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 전원 날인하다.

대표이사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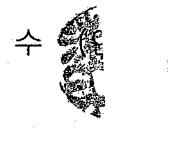
이사정



이사김



이사김



이사송



감사김



의회복지
법인 공생사 의복지 외